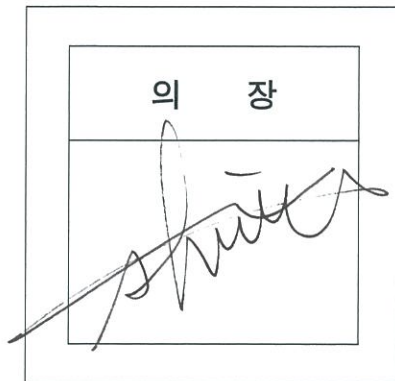
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계획



No-49



2019. 3.

서울특별시의회
[의사담당관]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계획

제28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(2019.3.8.)에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(의안번호 343)이 가결되어 이를 공포하고자 함

1 공포 대상 의회규칙

□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(의안번호 343)

○ 발 의 자 : 박기재 의원 발의(중구 2)

○ 개정 주요내용

- 서울시의회의 회의 중계 영상물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

개 정 전	개 정 후
〈신 설〉	제49조의3(영상자료의 제공) ① 의장은 제49조의2 제1항에 규정된 회의 중계 영상자료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. 이 경우, 의장은 영상자료의 제작·편집 및 제공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

○ 진행경위

- '19.1.28. 박기재 의원(찬성 13명) 일부개정규칙안 대표발의
- '19.3. 7. 제28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수정가결
- '19.3. 8.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

2019.03.08
의장

2

관련규정 및 절차

관련규정(발취)

○ 지방자치법 제43조(의회규칙)

-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

○ 서울특별시의회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11조(공포명의), 제12조(공포방법)

- 의회규칙의 공포는 의장 명의로 하고, 시보에 게재함

공포절차

○ 서울특별시의회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13조(공포절차)

- 의회규칙의 공포는 공포문을 작성하여 의장의 결재를 받고, 공포번호를 부여하여 서울특별시에 시보게재 요청

3

공포내역 및 행정사항

의회규칙 공포내역

연번	의회규칙명	공포번호	공포일	공포방법
1	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	제32호	2019.3.21(목)	서울시보 게재

행정사항 및 추진일정

○ 시보게재(시 시민소통담당관) 의뢰

'19.3.18 (월)

○ 의회규칙 공포 및 알림(의회 각 부서 및 전문위원실 등)

'19.3.21 (목)



붙임 :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문 1부.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을
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의회의장

2019년 3월 21일

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

1. 제안이유

- 의회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시의회홈페이지 회의 영상자료가 제공자 중심의 시청에 머무르고 있음.
- 이에, 자료 이용의 효율성 및 사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회의 영상물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누구나 자유롭게 공개된 회의 영상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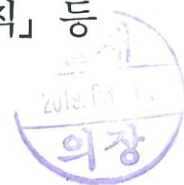
- 서울시의회의 회의 중계 영상물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(안 제49조의3 신설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회법」, 「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」 등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.

다. 기 타 : 해당없음.

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9조의3(영상자료의 제공)

- ① 의장은 제49조의2 제1항에 규정된 회의 중계 영상자료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. 이 경우, 의장은 영상자료의 제작·편집 및 제공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신·구조문 대비표

개정 전	개정 후
<p><신 설></p>	<p>제49조의3(영상자료의 제공)</p> <p>① 의장은 제49조의2 제1항에 규정된 회의 중계 영상자료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. 이 경우, 의장은 영상자료의 제작·편집 및 제공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영상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</p>

